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2023. 5. .

법제처 심사 전

법무부
인권국

1. 개정이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조사나 심리·재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절차,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신매매등 조사·심리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각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진술조력인 제도를 준용하여 진술조력인의 업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진술조력인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진술조력인이 조력하는 “피해자등”의 정의규정 신설(안 제1조의2 신설)

및 적용 범위 명확화(안 제2조)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자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의 참고인이나 증인을 “피해자등”으로 정의함.
- 2) 이 규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각의 진술조력인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함.

나. 진술조력인 자문단 구성 방식 구체화(안 제9조제2항 신설)

진술조력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진술조력인 자문단을 성별을 고려하여 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진술조력인명부 송부기관 확대(안 제12조제3항 신설)

법무부장관이 진술조력인명부를 송부해야 하는 기관에 해양경찰청을 추가하고, 직무범위 및 수사관할 등을 고려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및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도 진술조력인명부를 송부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5.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6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을 “제35조, 제35조의3 및 제36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위임된”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관한 사항과 진술조력인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피해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4.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제1항에 따른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

5.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신매매등범죄피해자

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의 참고인이나 증인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일부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서의 진술조력인 지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조사·심리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조사나 심리·재판

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제1항에 따른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한 조사·검증 또는 증인 신문

4.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인신매매등 조사·심리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참고인이나 증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아동·장애인 피해자”를 “피해자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법절차 및 아동보호절차

2의2. 아동·장애인의 특성 과정

제8조제2항 중 “피해자(「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 과정”을 “피해자등에 대한 조력 과정”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진술조력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진술조력인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 자문단은 성별을 고려해 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진술조력인 자문단의 구성, 수당 지급 등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을 “검찰총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직무범위 및 수사관할 등을 고려해 진술조력인명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 중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피해자등, 그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 성범죄행위자 또는 장애인학대행위자 등인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같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에 따른 보조인(보조인이 장애인학대행위자인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을 “피해자등, 그 법정대리인, 보조인”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피해자”를 각각 “피해자등”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을 각각 “피해자등, 그 법정대리인, 보조인”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하는 활동으로”를 “보조하기 위해”로, “활동을 할 수 있다”를 “업무를 수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피해자가”를 “피해자등이”로, “활동”을 “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피해자”를 “피해자등”으로, “활동”을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피해자”를 “피해자등”으로, “활동”을 “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피해자가”를 “피해자등이”로, “활동”을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피해자”를 “피해자등의”로, “활동”을 “업무”로 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피해자의 진술에”를 “피해자등의 진술에”로,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이후에 한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피해자등의 진술을 청취한 이후에만 피해자등의 진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피해자”를 “피해자등”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피해자와”를 “피해자등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조사 전 피해자 면담)”을 “(조사 전 피해자등 면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피해자를”을 “피해자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피해자와”를 “피해자등과”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피해자”를 각각 “피해자등”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로, “피해자 또는 피해아동 ○○○(가명)에 대한 조사·검증 과정”을 “피해자등인 ○○○(가명)에 대한 조사·검증 등의 과정”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로, “피해자 또는 피해아동 ○○○(가명)에 대한 조사·검증 과정”을 “피해자등인 ○○○(가명)에 대한 조사·검증 등의 과정”으로, “피해자(피해아동)와의 관계”를 “피해자등과의 관계”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로, “피해자·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피해

자 또는 피해아동 ○○○(가명)에 대한 조사·검증 과정”을 “피해자등, 그 법정대리인, 보조인 또는 변호사에게 피해자등인 ○○○(가명)에 대한 조사·검증 등의 과정”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로, “피해자 또는 피해아동 ○○○(가명)에 대한 조사·검증 과정”을 “피해자등인 ○○○(가명)에 대한 조사·검증 등의 과정”으로, “피해자 또는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피해자등과의 관계”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6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진술조력인의 자격, 양성, 배치 및 수사절차 참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제35조, 제35조의3 및 제36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위임된 -- ----- ----- ----- ----- 관한 사항과 진술조력인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신 설>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피해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서 준용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진술조력인(이하 “진술조력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규칙에서 법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또는 제38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4.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
6제1항에 따른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

5.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신매매 등범죄피해자

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의 참고인이나 증인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일부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서의 진술조력인 지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조사·심리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
죄 피해자의 조사나 심리·재
판

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
6제1항에 따른 범죄사건의 피
해자인 장애인에 대한 조사·
검증 또는 증인 신문

4.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
조에 따른 인신매매등 조사·
심리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형
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참
고인이나 증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
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
우

제3조(진술조력인 양성 교육) 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을 양
성하기 위하여 법 제3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아동·장애인의 심
리나 의사소통에 관한 전문지식

제3조(진술조력인 양성 교육) ①

또는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1. 사법절차 과정

2. 아동·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 과정

<신 설>

3. (생략)

② (생략)

제8조(진술조력인 자격의 관리·감독 등) ① (생략)
②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정에서 작성하는 보고서 등 진술 조력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기록을 문서화하고 저장·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진술조력인 자문단의 운영)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술조력인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진술조

-----.

1. 사법절차 및 아동보호절차

2. 피해자등-----

2의2. 아동·장애인의 특성 과정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진술조력인 자격의 관리·감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피해자등에 대한 조력 과정-----

-----.

제9조(진술조력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진술조력인 자문단을 둘 수 있

력인 자문단의 구성, 수당 지급 등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진술조력인명부의 작성)

① · ② (생략)

③ 법무부장관은 작성한 진술조력인명부를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제13조(진술조력인의 선정 절차)

① · ② (생략)

다.

② 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 자문단은 성별을 고려해 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진술조력인 자문단의 구성, 수당 지급 등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진술조력인명부의 작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검찰총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④ 법무부장관은 직무범위 및 수사관할 등을 고려해 진술조력인명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제13조(진술조력인의 선정 절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변호사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선정 신청을 할 때에는 말로 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진술조력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의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할 때에는 말로 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의 고지서로 한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14조(진술조력인의 선정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사건의 진술조력인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

③ 피해자등, 그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 성범죄행위자 또는 장애인학대행위자 등인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같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에 따른 보조인(보조인이 장애인학대행위자인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같다) -----

④ ----- 피해자등, 그 법정대리인, 보조인 -----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진술조력인의 선정 금지)

-----.

1. ----- 피해자등 -----

람	--
2. 피의자 또는 <u>피해자</u> 의 법정 대리인	2. ----- <u>피해자등</u>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u>피해자</u> 의 대리인 또는 변호 사	4. <u>피해자등</u> ----- --
제15조(진술조력인 선정의 취소)	제15조(진술조력인 선정의 취소)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진술 조력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 야 한다.	① ----- ----- ----- -----. ----- -----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3. <u>피해자</u> ,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진술조력인 선정의 취소를 요청하고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u>피해자등</u> , 그 법정대리인, 보 <u>조인</u> ----- -----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진 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u>피해자</u> , 그 <u>법정대리인</u> 또는 변호사와 진술 조력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 ----- <u>피해자등</u> , <u>그 법정대리인</u> , <u>보조인</u>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사소통 중개·보조의 범
위) ① 진술조력인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의사소통을 중개
하거나 보조하는 활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질
문의 취지를 피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이 바
뀌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질문
을 변환하여 전달하는 활동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
해자의 의사표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20조제4항 각 호의
내용을 설명하는 활동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
해자의 특성에 맞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20조제4항 각
호의 내용을 설명하고, 전문지
식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의 방
법, 조사 계획 및 보조수단 등
을 논의하거나 조언하는 활동
4.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얻
고 조사에 집중할 수 있는 환
경 등을 조성하는 활동
5. 그 밖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

제18조(의사소통 중개·보조의 범
위) ① -----

---- 보조하기 위해 -----

업무를 수행한다.

1. -----
----- 피해자등이 -----

----- 업무
2. ----- 피
해자등-----

----- 업무
3. ----- 피
해자등-----

----- 업무
4. 피해자등이 -----

----- 업무
5. -----

관이 피해자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개입해서는 아니 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이후에 한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그의 의사표현적 특징 등에 비추어 설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진술조서 등의 기재 사항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사과정에 진술조력인을 참여하게 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조서에 진술조력인을 통하여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를 적고, 진술조력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생략)

제20조(조사 전 피해자 면담) ① 진술조력인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조사 전에 피해자를 면

-- 피해자등의-----
----- 업무

② ----- 피해자등의 진술에 -----
----- 피해자 등의 진술을 청취한 이후에만 피해자등의 진술-----

-----.

피해자등-----
-----.

제19조(진술조서 등의 기재 사항 등) ① -----

----- 피해자등과-----

-----.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조사 전 피해자등 면담) ① -----
----- 피해자등을 -

담하려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진술조력인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조사 전에 <u>피해자와</u> 면담하는 경우 피해사실이나 해당 사건 내용 등에 관한 면담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④ (생략) 제21조(조사 후 의견 제출) ① 진술조력인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u>피해자의</u>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진술조력인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의견에는 <u>피해자의</u> 진술에 관한 신빙성 또는 사실관계를 평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③ (생략)	----- ----- ----- -----. ② ----- ----- <u>피해자등</u> <u>과</u>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조사 후 의견 제출) ① -- ----- --- <u>피해자등</u>----- ----- ----- -----. ② ----- ----- <u>피해자등</u>----- ----- ----- -----. ③ (현행과 같음)
--	--